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79,369,322	29,381,080
일반회계		888,123,867	26,643,716
특별회계		91,245,455	2,737,364
	공기업특별회계	38,175,329	1,145,26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8,175,329	1,145,260
	기타특별회계	53,070,126	1,592,10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37,060	25,112
	자활기금특별회계	393,425	11,803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5,875,250	176,25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65,431	7,963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2,136,066	64,082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78,152	8,345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1,097,215	32,916
	수질개선특별회계	42,187,527	1,265,62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500,000천원으로 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1,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금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연말까지 교부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명시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